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1235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1. 6. 24.

판결 선고2021. 8.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 피고와 E(F생)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F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2. 접수 제59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8. E에게 55,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출원리금 55,253,509원 및 그 중 원금 46,267,051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다. E은 2019. 8.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2,753,000원(= 98,100원/m² × 130m²)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2)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의 부탁을 받고 2019. 7. 31. E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3,085,657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2019. 8. 7. E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수리비 등으로 4,507,14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E의 부탁으로 E의 채무 7,592,797원(= 3,085,657원 + 4,507,14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E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8012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2,753,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개별공시지가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2. 접수 제59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성우

별지